

보 수 규 정

제정 1984. 8. 29	규정 제 2호	개정 2000. 12. 30	규정 제105호
개정 1984. 11. 29	규정 제 4호	개정 2002. 1. 1	규정 제112호
개정 1985. 4. 11	규정 제 6호	개정 2002. 3. 6	규정 제115호
개정 1986. 5. 21	규정 제15호	개정 2002. 12. 30	규정 제123호
개정 1986. 8. 1	규정 제24호	개정 2003. 12. 31	규정 제132호
개정 1986. 8. 26	규정 제27호	개정 2004. 4. 23	규정 제134호
개정 1986. 11. 18	규정 제29호	개정 2004. 12. 27	규정 제136호
개정 1987. 2. 27	규정 제31호	개정 2005. 12. 30	규정 제146호
개정 1987. 10. 10	규정 제32호	개정 2006. 12. 29	규정 제149호
개정 1988. 2. 29	규정 제34호	개정 2007. 12. 26	규정 제158호
개정 1989. 3. 8	규정 제35호	개정 2008. 2. 28	규정 제161호
개정 1990. 3. 1	규정 제38호	개정 2008. 7. 21	규정 제161호
개정 1991. 2. 8	규정 제41호	개정 2009. 12. 22	규정 제179호
개정 1992. 2. 1	규정 제45호	개정 2010. 12. 27	규정 제186호
개정 1992. 5. 2	규정 제47호	개정 2011. 12. 29	규정 제188호
개정 1993. 3. 5	규정 제52호	개정 2012. 1. 12	규정 제191호
개정 1993. 12. 31	규정 제56호	개정 2012. 12. 31	규정 제193호
개정 1994. 3. 2	규정 제58호	개정 2013. 4. 2	규정 제195호
개정 1995. 3. 6	규정 제62호	개정 2013. 5. 23	규정 제196호
개정 1996. 3. 7	규정 제66호	개정 2013. 12. 31	규정 제197호
개정 1996. 12. 2	규정 제68호	개정 2014. 11. 27	규정 제198호
개정 1997. 3. 1	규정 제73호	개정 2014. 12. 23	규정 제200호
개정 1997. 5. 13	규정 제77호	개정 2015. 2. 24	규정 제204호
개정 1997. 10. 1	규정 제81호	개정 2016. 1. 1	규정 제207호
개정 1998. 1. 1	규정 제83호	개정 2017. 1. 1	규정 제210호
개정 1998. 12. 30	규정 제91호	개정 2017. 2. 23	규정 제211호
개정 1999. 3. 31	규정 제94호	개정 2017. 8. 3	규정 제215호
개정 2000. 1. 1	규정 제 99호	개정 2017. 12. 15	규정 제221호
개정 2000. 11. 16	규정 제102호	개정 2018. 4. 18	규정 제22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원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4.11).

제2조 (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 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 수당, 퇴직급여, 여비의 지급은 별도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개정 02.3.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급여를 말한다(개정 85.4.11, 86.8.1, 86.11.18, 88.2.29, 89.3.8, 90.3.1, 91.2.8, 92.2.1, 93.3.5, 94.3.2, 95.3.6, 96.3.7, 02.1.1, 09.12.22, 10.12.27)
2. “기본연봉”은 직종별, 직급별로 경력등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로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삭제94.3.2, 신설 99.3.31, 개정 09.12.22).

보수규정

3. “성과연봉”은 개인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능력급으로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09.12.22)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개정 86.11.18, 09.12.22).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을 말한다(신설 09.12.22)

제2장 보수의 지급

제4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95.3.6, 11.12.29, 18.4.18)

제5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 연봉급의 지급은 월급제로 하고, 계산상 원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개정 09.12.22)

② 보수는 임명, 승진, 강임,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해면될 때에는 당월분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③ 퇴직, 휴직 및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구원 업무수행상 계속 집무할 때에는 그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2 (임금피크제 운영) ①임금피크제 운영시 임금굴절점 및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7.2.23)

1. 정년 3년 전부터 : 기본연봉의 7% 감액
2. 정년 2년 전부터 : 기본연봉의 10% 감액
3. 정년 1년 전부터 : 기본연봉의 14% 감액(조항신설 16.1.1)

제6조 (겸임연구직원 등의 보수) ① 직제및인사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파견받아 임용한 겸임연구직원 및 직위를 부여받아 임용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 연구장려금 및 연구활동수당 또는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4.11, 87.2.27, 94.3.2, 97.5.13).

②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근무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업무가 부여된 파견근무자에게는 연구 파견수당과 연구활동수당 및 업무성과금을, 행정업무가 부여된 파견근무자(원장포함)에게는 행정파견수당과 연구지원수당 및 업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87.2.27, 개정 87.10.10, 94.3.2, 95.3.6, 00.1.1).

③ 당월에 파견된 자중 제2조에 의한 파견이 아닌 자로서 보수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않고 당월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되는(또는 지급될) 연 보수총액이 원소속기관의 보수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보수보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00.12.30)

④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별표6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기본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기말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다. 다만, 임용후 차년도 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신설 91.2.8, 개정 02.3.6, 17.2.23)

⑤ (신설 94.3.2, 삭제 02.3.6)

⑥ 직제및인사규정 제1조의 2 제3항에 의한 계약직원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파견 받은 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에 의거 지급한다(신설 99.3.31)

제6조의2 (연봉제의 도입)(삭제 09.12.22)

제6조의3 (원장의 보수) ① 원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한다.(개정 09.12.22, 13.4.2, 14.11.24, 14.12.23)

② 원장의 보수는 [별표2]의 연봉급산정기준표상의 금액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본연봉 협약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09.12.22, 14.12.23, 17.8.3)

③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 의해 차등 지급한다.(개정 14.12.23, 17.8.3)

평가결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야미흡
지급비율	28%	26%	24%	22%	10%	0%

제7조 (개정 85.4.11, 86.6.26, 삭제 86.11.18, 신설 92.2.1, 삭제 97.10.1)

제8조 (휴직기간의 봉급) 연구원 직제및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봉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호 해당자 : 봉급액의 8할
2. <삭제> 14.12.23

제8조의2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 대하여도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 까지는 강임되기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장 수 당

제9조 (개정 85.4.11, 89.3.8, 90.3.1, 91.2.8, 92.2.1, 93.3.5, 삭제 95.3.6)

제10조 (가족수당등)(개정 10.01.01) ① (삭제 09.12.22)

- ②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4.12.23)
- ③ 직원으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4.12.23)
- ④ (개정 97.10.1)<삭제 17.2.23>
- ⑤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 ⑥ <삭제 17.2.23>.
- ⑦ (신설 00.11.16, 삭제 11.12.29)
- ⑧ (신설 90.3.1, 삭제 95.3.6)
- ⑨ (신설 92.2.1, 삭제 92.5.2)
- ⑩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다.(전조개정 89.3.8, 개정 90.3.1, 92.2.1)

보수규정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수당) (신설 92.5.2, 개정 94.3.2, 폐지 97.3.1)<신설 17.2.23>

-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계약직 및 상근임시직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센터소장 및 과장 이상의 보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업무비로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한다.
-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월평균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 ③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3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별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 ⑤ 원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0조의3 (연구활동수당등) (신설 97.3.1) <삭제 17.2.23>

제10조의4 (정근수당) <삭제 17.2.23>

제10조의5 (국외근무수당) ① 국외근무운영규칙에 의해 국외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별표7에 의한 국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12.27)

② 국외근무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체재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무수당을 50%를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04.12.27).

제11조 (수탁용역성과금) ① 원장 및 직원(상근임시직원 포함)에게는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4.11, 98.12.30, 13.12.31)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신설 85.4.11).

제11조의2 (교육훈련실비의 지급) 직원중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받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의 실비만을 지급한다(신설 94.3.2)

제12조 (실비의 보상) ① 겸임연구직원 및 임시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실비보상적경비지급기준에 따른다.(신설 85.4.11, 개정 86.11.18, 92.2.1, 96.3.7, 02.3.6)

② 비상근임원이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85.4.11).

③ 직원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4.11).

제12조의2 (복리후생비) ①(개정 96.12.2, 00.1.1, 04.12.27, 09.12.22, 14.12.23)<삭제 17.2.23>

② 원장을 제외한 정규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정연차일수중 년도중에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은 연차수당 지급제외기간에 포함한다(전문 신설 96.3.7, 개정 04.12.27).

제4장 퇴 직 금

- 제13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원장, 직원 및 상근하는 임시직원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02.3.6)
- ②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여 비

- 제14조 (여비의 지급)** ① 연구원의 원장, 직원 및 임시직원 또는 파견근무자가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개정 87.2.27, 02.3.6)
- ② 출장여비의 지급은 별표4에 의하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의 지급 방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7.2.27, 89.3.8, 91.2.8, 92.2.1, 02.3.6, 06.12.29, 13.5.23)
- ③ (개정 85.4.11, 86.11.18, 삭제 87.2.27)

제6장 연 봉 급(신설 09.12.22)

- 제15조(연봉급산정)** ① 기본연봉은 총 연봉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7.2.23>
- ② 성과연봉은 총 연봉 중 20%를 기준으로 성과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개정 17.2.23>
- ③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신규채용자의 당해연도 연봉은 직제및인사규정에 의거 산출된 기준연봉으로 산정한다.
- ⑤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임금인상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인상하며 이는 누적된다.(신설 17.2.23)
1. 수석연구원 이상 연구직원, 전문위원 이상 투자분석직원, 나급 이상 전문직원, 3급이상 관리직원 : 기준 인상을 최고·최저 등급 간 2%(±1%)의 격차를 두어 차등 인상
 2. 연구원, 전문분석원 이하 투자분석직원, 다급 전문직원, 4급이하 관리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포함) : 기준 인상을 최고·최저 등급 간 1%(±0.5%)의 격차를 두어 차등 인상(개정 18.4.18)
- ⑥ 직원의 연봉산정시 재직기간에 따라 별표8의 연봉감액율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7.2.23)
- ⑦ 국외근무운영규칙에 의한 국외근무로 인해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평가 또는 근무성적평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중 중간등급인 B로 한다.
- 제15조의2(성과연봉)** ① 연봉대상자의 성과연봉은 성과평가결과 비교그룹별로 구성된 재원을 그룹별 인원으로 균등배분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그룹별 상대평가한 실적평가 등급에 의해 아래표에 따라 익년도의 연봉급 산출에 반영하여 차등지급한다.(개정 17.2.23)

보수규정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구성비	10%	20%	40%	20%	10%
지급율	125%	112.5%	100%	87.5%	75%

② 성과평가결과 비교그룹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등급별 인원을 배분하되, 필요시 일부 그룹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7.2.23)

인원	등급별 인원 배분				
	S	A	B	C	D
1			1		
2		1		1	
	1				1
3		1	1	1	
	1		1		1
4		1	2	1	
	1		2		1
5		1	3	1	
	1		3		1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1	4	1	1
9	1	2	3	2	1

③ 성과연봉을 배분함에 있어 성과연봉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연봉급계약) ① 연봉급의 계약은 원장과 계약대상자간에 체결한다

② 연봉급의 계약은 [별표1]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되 2부를 작성하여 원장과 연봉계약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③ 연봉계약기간중 승진·전직 등과 같은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에 당해 직원은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봉의 산정은 매년 예산편성시까지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이 확정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의4(연봉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연봉급의 산정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연봉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연봉심의위원회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을 재심의하여 그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5(연봉의 재산정) 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재산정한다

1. 재직중 직종을 달리하거나 승진임용될 경우
2.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중인자가 병역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3. 연봉을 산정한 후 연봉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1984. 8. 29)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 29)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5. 21)(개정 소→원)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198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 1 및 <별표 1,3>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7.10.10)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수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8)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 5. 2)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2는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봉급표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퇴직금지급규정 등 타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수당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 칙(1993.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중 시간외근무수당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3. 6)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봉급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 3. 7)

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봉급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지급된 복리후생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2. 2)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1에 의한 월동보조비는 1996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봉급과 제10조의 3에 의한 연구활동수당 등의 지급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13)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98년도 당원 구조조정에 의거 이미 채용되어 지급된 계약직원의 보수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이전에 지급된 연구수당, 연구지원수당 및 업무성과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16)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보수규정

2. (경과조치) 제10조 제7항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도에 한해 11월 및 12 월에 지급한다.

부 칙(2000.12.30)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3. 6)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별표6에 의한 임시직원의 인건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취임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보수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8.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7.12.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4.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신설 08.7.21, 개정 13.4.2, 14.11.27 17.8.3)

행정안전부장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간 기본연봉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과 원장은 이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이 성립한다.

제3조(협약 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중 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기본 연봉) ① 원장의 기본 연봉은 연간 _____ 원(W_____) 으로 하고, 매월 12분의 1씩 연구원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원장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 통상적 수당,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③ 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 연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용어 및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 등은 원장에게 지급되는 연봉에서 원천징수한다.

제7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타 규정 및 기준과의 관계) 원장의 기본 연봉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 이외의 규정 또는 기준이 있을 경우 이 협약서가 우선하며, 기본 연봉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급여지급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규정

행정안전부장관 000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000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서를 체결함.

00년 00월 00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인)

<별표 1>(개정 09.12.22)

연 봉 계 약 서

임 용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피임용자 :

소속		직 급 (직위)		성명	
----	--	-------------	--	----	--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1. 상기 피임용자의 연봉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연봉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나. 연 봉 액 : 원(W)

 - 기본연봉액 : 원(W)

 - 성과연봉액 : 원(W)

2. 연봉액의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성과연봉은 당해 년도 개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에 의거 지급함

나.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함

다.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함

라.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준수사항

가.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나. 연구원에 근무하는 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년 월 일

임 용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피임용자 : 상기인 (직급)

(성명)

Ⓢ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00.11.16, 00.12.30, 02.1.1, 02.12.30, 03.12.30, 04.4.23, 04.12.27, 05.12.30, 06.12.29, 07.12.26, 08.2.28, 09.2.27, 09.12.22, 10.12.27, 11.12.29, 12.1.12, 12.12.31, 13.12.31, 14.12.23, 15.2.24, 16.1.1, 17.1.1, 17.2.23, 17.12.15, 18.4.18)

연봉 급산정기준표

1. 연구직

(단위: 천원)

2.전문직, 투자분석직

3.관리직

3. 전문직(삭제 10.01.01)

<별표2> (삭제)

<별표3> (삭제 17.2.23)

<별표4> (개정 00.1.1, 04.4.23, 08.2.28, 09.2.27, 13.5.23, 15.2.24, 18.4.18)

여비지급기준표

급 별		해 당 급 호
원 장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나 해당액
연구 직	선임연구위원(연구실장,연구기획실장,행정국장)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다 해당액
	연구 위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라 해당액
	수 석 연 구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 해당액
	연 구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 해당액
관리 직 · 전문 직 · 투자 분석 직	1 급 . 가 급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라 해당액
	선 임 전 문 위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 해당액
	2 급 . 3 급 . 나 급 . 다 급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 해당액
	전 문 위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 해당액
	4 급 , 5 급 - 가 , 5 급 - 나 전 문 분 석 원 , 분 석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 해당액

※ 국외항공운임지급은 제1호 해당자는 1등정액, 기타자는 2등정액 지급

※ 국내여비지급은 제1호, 제2호로 구분하여 지급

(별표4-1) (신설 02.3.6, 04.4.23, 삭제 06.12.29)

(별표 5) (제10조의3에 의함)(개정 2000.1.1, 04.4.23, 07.12.26, 08.2.28, 09.2.27, 15.2.24, 삭제 17.2.23)

(별표6) (신설 02.3.6, 개정 02.12.30, 04.12.31, 05.12.30, 06.12.29, 07.12.26, 11.12.29, 16.1.1, 17.1.1, 17.12.15)

임시직원 인건비 지급액	
객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보 조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사무보조원	객원연구원 중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금액
자료정리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공시하는 직종별임금중 자료입력원 노임금액

(별표7) (신설 04.12.27)

국외근무수당 지급표

지역 지급대상	미국 (US달러)	중국 (US달러)	영국 (파운드)	독일,프랑스 (유로)	일본 (엔)
선임연구위원	1,891	2,042	1,465	2,234	323,175
연구위원	1,724	1,861	1,336	2,036	294,528
수석연구원	1,572	1,696	1,222	1,857	268,443
연구원	1,434	1,548	1,111	1,695	244,829

(별표 8)(신설 17.2.23)

정근수당 통합에 따른 연봉감액을

재직기간	연봉 감액율
1년 미만	연봉의 7.14%
1년 초과 2년 미만	연봉의 6.43%
2년 초과 3년 미만	연봉의 5.71%
3년 초과 4년 미만	연봉의 4.99%
4년 초과 5년 미만	연봉의 4.28%
5년 초과 6년 미만	연봉의 3.57%
6년 초과 7년 미만	연봉의 2.85%
7년 초과 8년 미만	연봉의 2.14%
8년 초과 9년 미만	연봉의 1.42%
9년 초과 10년 미만	연봉의 0.71%